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6. 3 선고 2019가합109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선

피고E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건

변론 종결2021. 5. 13.

판결 선고2021. 6. 3.

주 문

1. 피고와 F 사이에 2015. 7. 16.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3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피고 B에게 13,000,000원, 피고 C에게 147,000,000원, 피고 D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피고 B에게 13,000,000원, 피고 C에게 147,000,000원, 피고 D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F 사이의 관계

1) 원고들은 2015. 4.경 지인을 통해 F을 알게 되었다. F은 원고들에게 '나는 FX(Foreign Exchange) 마진 거래 전문가이다. 투자금으로 FX 마진 거래를 하면 월 20%이상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자신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6개월간 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F의 말을 믿은 원고 A는 2015. 4. 22. 50,000,000원, 2015. 6. 22. 50,000,000원을, 원고 B은 2015. 4. 21. 13,000,000원을, 원고 C는 2015. 6. 25.에 23,000,000원을, 2015. 7. 6. 124,000,000원을, 원고 D은 2015. 5. 21. 30,000,000원, 2015. 6. 22. 20,000,000원을 각 F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F이 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6. 3. 10.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1436호로 F을 피고로 하여 위 돈을 포함한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30. 원고들 청구 인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6. 7. 20. 확정되었다.

나. F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F은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FX 마진 거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4,750,473,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243 등 사건), 위 법원은 2018. 12. 4. F의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F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이후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다. 피고와 F 사이의 계약

1) F은 2015. 7. 16.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LED 전등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발행 주식 22,000주(발행주식 40,000주의 55%)와 경영권을 대금 2,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015. 7. 17. 계약금 200,000,000원을, 2015. 8. 18. 중도금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2) F과 피고는 2018. 11. 2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금 1,600,0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대상 주식을 G 발행주식 60,000주(G는 2016. 4. 26. 2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다) 중 8%인 4,800주로,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각 변경하였고, 2019. 1. 28. 다시 매매대상을 G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11%인 6,600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일 이전인 2015. 4. 21.부터 2015. 7. 6.까지 F에게 합계 310,000,000원(= 100,000,000원 + 13,000,000원 + 147,000,000원 + 50,0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위 투자금은 F의 기망에 속아 지급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의 F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나. 채무자 F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1) 채무자 F의 재산상태 가) F의 적극재산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 무렵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 각 부동산 가액란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일 무렵 F의 적극재산 가액 합계는 667,533,300원이다.

1	세종시 H아파트, I호	261,000,000	240,000,000
2	정읍시 J 임야 18,805m ² K 창고용지 324m ² K 지상 경량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창고시설 농업용창고 27m ² L 임야 322m ² 중 1/2 지분	350,000,000	300,000,000
3	광양시 M 임야 47,229m ²	25,533,300	
4	전남 고흥군 N 임야 19,835m ²	23,000,000	

1	세종시 H아파트, I호	261,000,000	240,000,000
5	전남 함평군 ○ 대 198m ²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51.8m ²	8,000,000	
합계	667,533,300	540,000,000	

나) F의 소극재산

이 사건 계약 당시 F은 원고들에 대하여 투자금반환 채무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31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F 소유의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에 피담보채권액 합계 5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FX마진거래 투자와 관련하여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투자금 반환 내지 손해배상 채무(그 금액은 별지 표 기재 투자금의 합계인 11,892,600,000원이다)를 제외하더라도 F의 소극재산 가액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최소한 850,000,000원(= 310,000,000원 + 540,000,000원)이었다.

다) 소결론

F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채무자 F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G 발행주식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알기 어렵다. 그럼에도 F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이와 같은 주식을 20억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F에게는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이 사건 계약체결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상 매도인으로서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의 원고들과의 금전거래 및 F이 FX마진 거래를 했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F과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다른 소송사건을 진행하던 중 F의 소재를 파악하여 이 사건 계약을 2차에 걸쳐 변경하여 계약을 종결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반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F은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제9조)으로 양수도 효력 발생 전이라도 피고 및 G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영업을 위한 각종 활동 및 총판, 대리점 모집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F은 영업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지원을 받지 않았다.

② F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인 P을 통해 피고를 소개받아 G의 채무 내용, 주식의 평가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주식 및 경영권을 매수하여 다른 회사와 합병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이 이 사건 계약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G의 주식 가액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제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된 G 발행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1,694원이다. F 및 피고는 위 1주당 각 금원의 8배 이상인 1주당 90,909원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는데, F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G의 주식과 운영권을 같이 매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매매대금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인 310,000,000원의 범위에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직접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의 취소로 인해 반환될 목적물은 F이 피고에게 지급한 현금 4억원인데, 현금은 그 성질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피고 B에게 13,000,000원, 피고 C에게 147,000,000원, 피고 D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각 금원에 대해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사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므로, 앞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성철

판사김준석

판사이유경

별지